

契約者配當의 過去, 現在, 그리고 未來에 對한 小考

金 鐵 洙

(亞洲生命 常務理事·代表計理人)

◀ 目 次 ▶

- I. 研究背景
- II. 우리나라의 生命保險 契約者配當
- III. 契約者配當의 性格
- IV. 現行 契約者 配當制度의 問題點
- V. 向後 契約者配當의 바람직한 方向
- VI. 맺음말

I. 研究背景

解放과 더불어 本格的인 發展을 시작한 우리나라의 生命保險產業은 初創期에는 激動과 試鍊에 시달렸으나, 第3共和國이후 政府의 經濟開發 5個年計劃의 成果에 따른 國民經濟的 成長을 바탕으로 量的·質的으로 눈부신 成長을 거듭하여 1980年代에 그 成熟期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러나 1982年 6月 政府의 經濟活性化를 위한 大幅의인 公金利 引下措置에 따라 保險資產 運用收益이 減

少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한 利差損失의 發生은 1978年 9月 確定配當制度의 實施 이후 持續的으로 推進해 오던 契約者 配當制度의 實施를 잠정적으로 留保시키기에 이르렀다. 이에 對應한 生保業界는 新種商品의 持續的 開發로 契約者 保險니드의 變化에 적극 대처함과 同時에 內實經營과 利益管理를 통한 經營利益 實現을 꾸준히 追求함으로써 1988年 4月 8日(財務部 生保 22330-153 “契約者 配當準備金 積立 및 配當에 관한 指針”)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契約者 配當制度를 實施하게 되어 現在에까지 이르고 있다.

그러나, 最近들어 對外的 市場開放과 對內的 新規參與로 인한 生保社間의 競爭激化, 綜合金融化趨勢에 따른 他金融圈의 生保市場 浸透試圖, 株式市場의 長期沈滯, 金利自由化의 漸進的 實施에 따른 金利리스크 增大등에 따라 生命保險產業은 成長性 鈍化, 收益性 惡化, 安定性 脆弱이라는 극히 어려운 狀況에 直面하고 있다. 더욱이 不動產 任意評價, SWAP 去來에 의한 早期利益計上 및 事

業費 移延등에 의한 무리한 配當財源 調達로 財務構造는 더욱 惡化一路에 있고 一部 生保社의 경우 資産蠶食 狀態가 深化되고 있다. 이렇게 契約者配當을 둘러싼 生保環境이 急變함에 따라 現在 施行되고 있는 契約者 配當制度를 한번쯤 再照明할 必要가 생겼다. 이를 위해 本稿에서는 理論的인 側面에서 우리나라 生命保險 契約者配當의 性格을 再考하고, 契約者配當과 관련하여 向後 豫想되는 環境變化에 따른 現行 契約者配當 制度의 問題點을 導出하고 그 代案을 模索함으로써 向後 契約者配當의 바람직한 方向을 提示하고자 한다.

II. 우리나라의 生命保險 契約者配當

本章에서는 契約者 配當의 일반적인 定義와 背景, 根據등을 간단히 檢討해 보기로 한다.

生命保險 利益金の 대부분은 장래의 豫定值(Expected Value)인 豫定死亡率, 豫定利率, 豫定事業費率등 保險料 算出基礎를 過渡하게 安定的으로 適用함에 따라(結果적으로 볼 때) 생긴 概算保險料의 精算으로 契約者에 還給하게 되는데 이 부분을 契約者 配當이라고 한다. 이 契約者 配當은 契約者 歸屬部分인데 反하여 剩餘金중 일부는 株主에게 配分되어야 할 部分도 있으나 그에 관한 言及은 省略하기로 한다. 契約者 配當을 實施함에 있어서는 保險約款에 몇가지의 支給方法을 열거하고 그 方法 중의 하나를 契約者가 選擇하는 것이 보통이다.

配當支給 方法(Dividend Option)에는

- 1) 現金(Paying in Cash)
- 2) 保險料相計(Offsetting against Premiums)
- 3) 預置(Accumulating at Interest)

4) 完納保險追加(Purchasing Paid-up Additional Ins.)

5) 定期保險追加(Purchasing Term Insurance) 등이 있다.

이외에도 剩餘金은 保險料를 引下하거나 解約還給金を 引上하는 財源으로 쓸 수 있고 累積缺損의 補填이나 責任準備金の 追加 積立을 위하여 쓰여질 수도 있다. 다만 어떤 경우에도 契約者가 不特定多數大衆임을 고려하여 政府의 承認을 得하는 方法에 의하여 公平하고 實用的으로 契約者가 理解하기 쉽도록 하여야 한다. 실제에 있어서는 위의 支給方法중 복잡한 方法을 制限하거나 通貨量을 감안하여 現金 支給을 억제하는 경우가 많다.

여기서 우리나라 契約者配當의 歷史와 背景을 살펴봄으로써 뒤에 거론할 契約者配當의 性格에 큰 참조가 되리라 믿는다.

먼저 “保險業法” 第98條는 責任準備金과 非常危險準備金を 計上하도록 명령하고 同 施行規則 第21條에는 장래에 支給할 保險金, 還給金 및 契約者配當金の 支給에 充當하기 위하여 責任準備金を 積立하도록 定하고 同 第1號의 3에서 契約者配當金を “保險事業者가 保險契約者에게 配當하기 위하여 積立한 金額으로서 財務部長官의 承認을 얻은 金額”으로 定義하고 있다.

現在の 標準約款 (財務部 生保 22330-251 '91. 7. 22)에 의하면 “會社는 定款 및 事業方法書에 定한 바에 따라 每 事業年度末에 發生한 利益金중에서 契約者 利益配當準備金を 積立합니다.”로 되어 있으나 우리나라 生命保險의 搖籃期였고 配當이란 생각치도 못하였던 1960年 4월에 認可된 ○○社의 教育保險約款 第38條에는 다음과 같이 配當의 性格과 方法을 論述하고 있다.

第39條

(1) 會社は 定款 및 事業方法書에 定한 바에 따라 積立한 契約者 配當準備金에서 每 事業年度末 現在로 3年이상 계속된 有效契約에 대하여 利源式 方法으로 계산한 契約者配當金을 다음에 의하여 分配합니다.

1. 配當金은 配當을 行할 次年度에 始作되는 保險年度의 保險料와 相殺합니다.

2. 3. 4. 省略

(2) 전항에 …… 移越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1960年度의 約款을 說明코자 하는 것은 첫째로는 利源式 配當概念이 確實하게 約款에 明記되어 있었다는 것과 支給方法까지도 자세히 열거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利源式 配當方法이라는 三大利源인 死差益, 利差益, 費差益을 말하는 것이며 이는 保險料 및 責任準備金 算出基礎의 豫定値와 實際値와의 差異를 말하는 것이며 이는 概算保險料의 精算의 性格을 分明히 하는 것이라 하겠다.

하여간 우리나라의 保險 胎動期로 볼 수 있는 1960年代 초반부터 契約者 配當을 約款에 포함시켰는데, 第3共和國이후 급격한 經濟開發 및 成長으로 資金需要가 急騰하면서 利子率이 上昇하자 保險의 豫定利率 12%와 公金利 30%와의 差異(gap)를 補填하기 위하여 1965年 10月 1일부터 「特別配當」制度를 實施하였으며 그 計算方法은 納入保險料의 一定率을 加算 積立하는 方法으로 21%에서 3%까지 下落하다가 1972年 8月 3日字로 終了되었다. 그러나 1978년부터 다시 公金利가 引上하게 되자 (定期預金利率-保險豫定利率-0.5%)를 解約還給金에 變動시킴으로서 公金利 變動時 탄력적으

로 連動되는 「確定配當」制度가 1978年 9月 2日字 財務部 保一 1233-815로 시달되어 이듬해 1月부터 施行되었다. 즉 「特別配當」과 「確定配當」은 높은 公金利와 長期的 低率體制의 保險利率과의 差異를 臨機應變的 또는 連動的으로 對處함으로써 豫定利率에 의한 “料率調整”을 配當의 形式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經營成果의 配當과는 當初부터 성격적으로 거리가 먼 것이었다. 물론 그 당시에 死差益이 발생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市場競爭上 불가피한 「特別配當」과 「確定配當」외에는 고려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1980년대 들어서면서 일부 生保社들이 當期利益을 實現하거나 累積損失을 완전히 벗어날 수 있게되자 政府는 契約者配當이라는 次元에서 制度的으로 再檢討하게 되어 1984年 3月 31日字 財務部 保一 1233-222호 “83會計年度의 生命保險 契約者 配當準備金 積立 및 配當에 관한 指針”으로 「死差配當」을 처음으로 實施하도록 하였으며, $(1 - \text{經驗死亡率} \times 70\%) / \text{豫定死亡率}$ 을 危險保險料에 곱하는 方式으로 算出하여 死差益의 일부를 契約者에게 還元해 주었다. 이것이 1986年 1月 11日字 財務部生保 22330-12 “簡易經驗生命表 適用” 및 保險監督院 生審 560-503(1986.1.28) “簡易經驗生命表 適用에 따른 既存契約者에 대한 配當”에 의하여 “精算配當”이라는 名目으로 新規加入者의 料率引下(新死亡率인 簡易經驗死亡率)와 均衡를 맞추기 위하여 既存契約者에게도 危險保險料의 差額을 配當한 金額인데 그 計算方法은 $(1 - \text{簡易經驗 死亡率} / \text{豫定死亡率}) \times \text{危險死亡率}$ 로 算出하였다. 요즈음 가장 중요한 配當으로 부각한 소위 「利差配當」은 1988年 3月 31일부터 施行된 것으로 利差益規模가 점차 增加함에 따라 豫定利率과 實際資産 利回率과의

差異를 配當해 주는 것으로 解約還給金×(12%-(豫定利率+確配利率))에 의거 계산하였다. 또 같은 시점에서 「長期維持特別配當」이 施行되었는데 이는 中長期 商品의 維持率提高를 위한 優待措置로서 經過年數에 따라 支給하는데 그 算式은 $(1\% + (\text{經過年數} - 6) \times 0.2) \times \text{解約還給金} = \text{長期維持特別配當}$ 이었다.

그리하여 지금도 「死差配當」「利差配當」「長期維持特別配當」의 세가지 形態로 契約者 利益配當이 施行되고 있는데 1991年 4月에는 前年 8月 31日字로 示達한 “生命保險會社의 剩餘金 및 再評價積立金 處理 指針”에 의거 「再評價差益 特別配當」이란 새로운 配當을 誕生시키기도 했다. 이러한 配當金의 支給實績을 보면 아래와 같다.

(丑-1) 配當種類別 支給實績 (單位: 億圓)

區 分	實施期間	配當金額	備 考
特 別 配 當	'65~'72	264	納入 保險料의 一定率 '87 死差配當에 統合
確 定 配 當	'78~'91	9,462	
精 算 配 當	'85~'86	254	
死 差 配 當	'84~'91	3,090	
利 差 配 當	'87~'91	4,292	
長 期 特 別 配 當	'87~'91	1,631	
計		18,993	

(丑-2) 年度別 會社群別 配當所要額 (單位: 億圓)

區 分	'87	'88	'89	'90	'91	'92 豫상
既存社	1,028	1,202	1,715	1,514	3,111	3,816
新設社	-	-	-	24	138	339
合 計	1,028	1,202	1,715	1,536	3,249	4,155

주1) '90年度는 保險年度 配當 經過措置 該當分임.
 주2) '91年度 既存社의 死差配當率은 37% 基準임.

한편, 財務部 生保 22330-101('91.3.29)호 “契約者 配當準備金 積立 및 配當에 관한 指針”에 의하면 配當前 剩餘金이 없는 會社는 總資産 (移延資産 포함)이 解約還給金式 保險料積立金으로 計算한 負債總額보다 '91年度는 30億圓, '92年度는 60億圓, '93年度에는 100億圓을 超過하도록 每事業年度 決算實績에 따라 計算한 上記 擔保力 基準을 다음 事業年度末까지 充足시켜야 하며, 이 基準을 違背하는 會社는 契約者 配當率을 自律的으로 決定할 수 없다는 契約者 配當을 위한 擔保力 確保基準이라는 새로운 規程을 定하기도 했다.

III. 契約者 配當의 性格

生命保險은 여러가지 基準에 의거 여러가지 方法으로 分類될 수 있겠으나 契約者 配當의 有無에 따라 配當附保險(Participating Policy or Insurance with dividend)과 無配當保險(Non-participating policy or Insurance without dividend)으로 分類된다.

歷史적으로 본다면 生命保險의 經營主體가 되는 保險者가 相互會社의 形態를 취하고 있을 때 配當附保險을 販賣하여 剩餘金을 社主人 契約者와 共有하도록 하고 株式會社의 形態를 취하고 있을 때는 無配當保險을 販賣함으로써 剩餘金은 社主人 株主에게 配當하게 된다. 따라서 契約者들은 자신들이 配當에 參與할 수 있는(Participating) 保險을 選好하게 되며 이에 따라 無配當保險은 競爭力을 갖기 위하여 각종 豫定率을 調整하여 現實的 料率引下를 단행하게 된다.

保險의 特徵은 “大數의 法則”에 의한 統計 豫定值에 의하여 運用되는 經濟形態인 바 어디가

지나 豫定率이라는 假說에 의하여 算出·運用되고 있다. 또 現在는 모든 生命保險會社가 株式會社로 되어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契約者配當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다만 事後的의 契約者配當이나 또는 無配當保險으로 事前的 割引을 택하느냐 하는 選擇과 그 쪽의 決定問題만 남아있다. 즉 契約者配當은 事後的 保險料率의 調整이며 無配當은 事前的 料率割引이라 할 수 있다.

死差益(Mortality Savings, Mortality Gain)配當은 豫定死亡率에 비하여 實際死亡率이 낮게 나타난 것에 의하여 그 保險料 部分을 還給하는 것으로서, 바꿔말하면 實際 死亡率을 保險料 算出時 정확히 알았다면 그것에 의하여 낮게 받아야 할 保險料를 높게 받았기 때문에 還給된 部分을 돌려 주는 것이어서 일반적인 株主에 대한 利益配當과 그 性格을 전혀 달리한다고 하겠다. 특히 相互會社의 경우는 契約者가 社主이기 때문에 利益配當의 總體的인 性格을 經營實績의 分配(Allocation)로 보는 見解도 있으나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株式會社의 形態에서는 高料率/高配當, 低料率/低配當의 體系는 料率의 調整이라고 보는 見解가 妥當하다고 보아야 한다.

利差配當(Interest Gain, Savings)도 이러한 論理로 볼 때 豫定利率을 實際利率로 上昇시킴에 따라 保險料를 事後的으로 引下調整해 주는 것이라 하겠다.

死差配當과 利差配當의 경우 1990년까지는 財務部(生命保險課)의 “契約者配當金 積立 및 配當에 관한 指針”에 의하여 一定率을 配當하였으나 1991 會計年度부터는 적어도 形式的으로는 일정 範圍內에서의 自律化를 標榜하는 形式을 取하여 死差配當의 경우는 豫定死亡率의 10%까지, 利差

配當의 경우는 最高最低가 2%(10~12%) 차이가 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現實에 있어서는 모든 會社가 한결같이 最高의 配當率을 選擇함으로써 均一配當의 實施와 같은 結果가 되었는데 이는 누구나 豫測할 수 있었던 당연한 結果라 하겠다. 現在 生命保險市場의 競爭에 관하여 過當, 過熱, 無秩序, 危機 등등의 否定的인 表現을 많이 듣는데 本人은 意見을 달리한다. 물론 그러한 競爭 雰圍氣를 支持한다거나 그것이 옳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競爭이 過渡期的으로 不可避하다는 것이다. 그 理由는 다시 檢討하기로 하고 그러한 與件속에서 會社가 最少配當率을 選擇한다는 것은 高率의 保險料를 意味하는바, 過熱(?)된 競爭속에서 같은 商品(組立形態를 除外하고)을 高價에 販賣코자 하는 經營戰略은 있을 수 없을 것이다. 經營戰略이 “주어진 環境속에서 長點을 極大化하고 短點을 極小化 함으로써 가장 效果的으로 企業目標에 到達할 수 있는 合理的·合法的 手段”이라면 말이다.

競爭이 本 主題는 아니지만 配當率의 競爭 또는 自律化 問題는 당연히 檢討되어야 할 課題이므로 이에 앞서 生保市場의 競爭의 必然성과 問題點을 간단히 언급하고자 한다.

가. 競爭의 必然性

既存 6個社의 改名을 除外한 實質的 最年少 會社는 “大韓教育保險(株)”으로 設立認可日은 1958年 8月 7日이다. 그 후 新設生保社의 事業免許를 中斷하여온 政府는 1986年 LINA의 事業免許를 시작으로 1988년부터 地方(先發)社, 合作社, 內國社, 地方(後發)社의 순으로 國內外的 壓力속에서 段階的 開放이라는 表現을 疑心케 할 程度로 開放

幅을 擴大하였다. 이러한 同時 開放에 따라 任員의 스카우트, 各級管理者의 스카우트, 募集人의 스카우트, 新規募集人의 導入競爭이 熾烈했던 것은 너무나 당연한 結果이며 이에 대한 應急措置로 만들어 낸 各種規制가 根源的인 解決策을 제시하지 못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歸結이라고 하겠다. 첫째로 會社의 最少한 骨格을 維持하기 위하여는 社長, 數名의 任員, 監事, 代表計理人을 비롯하여 필요한 最少의 計理人, 電算專門家, 營業專門家, 營業企劃專門家, 各級店舖長, 主任級募集人, 新規募集人 등은 生命保險會社를 갖추기 위한 어쩔 수 없는 必要措置라 하겠다.

둘째로 이렇게 本·支社를 設立하고 보면 固定 事業費의 解決과 保險의 確率理論을 위한 大數의 法則, 또는 規模의 經濟까지의 規模擴大가 不可避하다.

셋째로는 市場先占을 위한 競爭이 熾烈하게 된다. 生命保險은 事業方法書 第1條에 의하여 大韓 民國 全域에서 營業이 가능한바 市場戰略의 포인트를 어디에 두느냐, 또 어떤 會社로부터 스카우트 해오느냐는 자못 重要한 意味를 가진다 하겠다.

나. 競爭으로 인한 問題點

20여개 會社에 事業免許를 준다하더라도 每年 2개 정도씩 10年 정도에 나누어 許可해 주었다라면 위에서 言及한 競爭의 樣相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을까 한다. 本人의 意見으로는 業界의 秩序나 事業費 節減을 위하여 自體的인 人力 養成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憲法의 職業選擇의 自由에 反하여 스카우트 防止 協定 등의 制限을 둔다는 것은 銀行, 證券社, 自動車, 電子產業 등 어떤 경우에도 없었던 發想인것 같다. 이러한 지나칠 정도의 規

制속에서도 既存社들은 市場占有率을 계속 維持하길 願하며 新設社들은 이를 蠶食하여야 되는 立場에 있다.

現在 大部分의 新設社 任員들은 既存生保社의 前職 任員들이었으므로 既存社가 規模(Portfolio)가 작은 初期의 赤字를 規模가 커진 時點에서는 數年間に 걸쳐 쉽게 償却했다는 事實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損益보다는 規模나 物量에 集中하고 있다. 이러한 觀點에서 配當率의 差異가 料率의 差異를 意味하는 것이므로 低配當에 의한 高料率을 택할 會社는 아무도 없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같은 料率로 알고 加入한 契約者를 위하여도 事後的으로 差等化한다는 것은 欺瞞이 될 수 있으므로 充分한 事前弘報나 公示가 없이 施行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競爭에 관한 問題點은 本文의 主題보다도 훨씬 廣範圍한 것이므로 더 이상 擴大 言及은 省略하기로 한다.

IV. 現行 契約者 配當制度의 問題點

株式市場의 沈滯로 資産運用收益이 急減하여 자체 契約者配當 財源調達이 不可能하므로 엄청난 株式評價損을 안은 狀態에서도 계속적으로 不動產 評價등에 의해 配當財源을 調達함으로써 一部 生保社의 경우 財務構造가 대단히 脆弱해지고 있는 實情이다. 또한 生命保險의 營業環境 惡化로 인한 成長性的 鈍化 및 收益性的 惡化, 他金融圈과의 競爭을 위한 高收益性商品(老後設計年金保險, 老後福祉年金保險, 새家庭福祉保險)의 開發·販賣로 인한 코스트의 壓迫, 銀行圈의 自體 退職金 積立 許容(銀行圈의 從退市場 浸透 基底許容)으로 인한 生保의 保險收支 惡化 및 資産伸張率 鈍화로 生命

保險의 契約者配當 與件은 惡化되었으나 配當率은 變動없이 그대로 適用하고 있어 生保業界의 財務構造는 가일층 脆弱해지고 있다.

특히 新設社는 엄청난 費差損失 狀態에서 移延事業費 計上으로 責任準備金 積立 및 契約者配當財源을 調達하고 있으며, 계속적인 株式市場 沈滯 및 貸出金과 債券運用 環境惡化로 契約者配當財源調達が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豫想할 수 있다.

그리고 金利自由化의 進展에 따른 市場 實勢金利의 下落과 債券收益率 下落으로 生命保險產業의 收益性 惡化가 豫想되며, 與受信金利 完全自由化의 경우 金融機關間의 受信競爭에 의해 生保의 特定商品에 대한 受信金利 上昇으로 生保 收益性이 더욱 惡化될 것이며, 특히 現行 生保商品은 銀行定期預金金利 連動附 性格이 강하여 與受信마진 폭의 縮小정도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겠으나 定期預金金利가 引下될수록 生保의 利差損益은 불리하게 된다고 할 수 있겠다. 만약 銀行定期預金 金利가 8% 미만으로 引下될 경우는 生保 利差損益에 지대한 影響을 미치게 될 것으로 豫想할 수 있다.

특히 從退, 企業年金保險市場은 稅制惠澤 廢止 與否, 銀行圈의 從退市場 浸透, 社外積立分의 國民年金 轉換與否에 따라 큰 變化가 豫想되며, 生保產業의 利廻資産增大에 寄與도가 높은 從退保險이 他金融圈으로 이동시 生保社의 規模縮小 및 損益惡化가 동시에 豫想된다 하겠다.

先發地方社의 경우 1993年 3月 決算時까지는 事業費 移延에 의해 決算이 용이하나 1994年 3月 決算부터는 事業費 移延이 불가능하고 더우기 移延資産을 償却하여야 하며, 또한 契約者配當財源의 急增으로 生保環境의 급격한 好轉이 없는 한 擔保力 確保基準 達成이 어려울 것으로 豫想되고

있다.

따라서 生保業界가 安定的인 收益構造 및 財務構造 狀態에 있을때 契約者 權益保護를 위한 最高, 最善의 政策으로 維持되었던 契約者 配當制度는 導入當時 優先 配當實施에 초점이 맞추어져 配當基準原則을 완전히 具備하지 못한채 施行되었음에도 그동안 그다지 큰 問題點은 없었으나, 最近 生保의 損益構造가 惡化됨으로써 다음과 같은 問題點이 發生하고 있다.

첫째, 配當規模의 適正化가 외면된 劃一的인 配當이 實施되고 있다. 政策當局이 既存社의 경우 最高配當率에 의한 配當을 實施하도록 行政指導함으로써 外國社를 제외한 全社가 配當競爭을 의식하여 最高配當率에 의한 配當을 實施하게 되었으며, 株式市場이 沈滯된 現 狀態에서는 最高配當率(利差配當 基準率 12%)에 의한 配當實施는 특히 과다한 移延事業費 計上으로 無收益 資産이 15%를 超過하는 新設社의 立場에서는 대단히 무리한 水準이라 하겠다.

또한 株式部門의 未實現 評價損이 막대하여 不動產評價益을 上廻하고 있으므로 資産評價時 損失 狀態에서 Capital Gain 配當 性格인 長期維持特別 配當의 계속적인 實施는 財務構造가 脆弱한 新設社 뿐만아니라 既存社까지도 역부족한 實情이라 하겠다. 특히 保險料 算出時 획일적인 算出基礎率을 適用하고 配當率은 當局이 定한 일정한 範圍(現행, 利差配當基準率은 10%~12%, 死差配當基準率은 第2回 經驗生命表上 死亡率의 78%~88%)내에 自律決定하여 사용하도록 되어있어 新設 生保社와 既存 生保社間의 隔差가 심한 狀態에서 이러한 配當制度는 자칫하면 弱肉強食이 되어 新設 生保社의 經營萎縮과 財務構造의 脆弱으로 인

한 倒産이 속출하게 되는 狀況에 처하게 될 것이다.

둘째, 配當財源 調達에 관한 原則이 未洽하여 最低 義務配當 實施로 損失時에도 配當을 許容하는 財務構造의 脆弱을 가속하고 있다. 既存社는 資産評價時 損失이 크나 利益 發生部分만 評價하여 配當財源을 調達함으로써 未實現 損失部分이 增大되고 新設社는 移延事業費 計上에 의해 決算을 行하여 契約者配當 財源調達 및 責任準備金を 積立하고 있으나 移延資産 規模가 納入資本金을 超過하는 실정인데다가 配當所要額이 급격히 增加하고 있으며 移延事業費 償却時點의 到來로 決算의 脆弱性이 豫想되고 있다.

셋째, 安定的이고 持續적인 契約者配當 實施을 위한 制度的 裝置가 未洽하다. 將來의 非常危險에 對備하고 安定的인 契約者配當 實施을 위한 內部 留保額이 없고 이의 積立에 관한 制度가 未洽하며 특히 契約者配當을 위한 擔保力 確保基準에서 配當前 剩餘금이 發生하지 않은 會社에 대해서만 資本金 增額을 통한 擔保力 確保를 要求하는 것은 配當財源 부족액을 株主에게 負擔시킬 수 있는 것으로 不適合하다 하겠다.

넷째, 契約者 配當方法의 複雜 및 契約者간의 公平性이 不足하다. 利差配當, 確定配當, 長期維持 特別配當, 死差配當 등 算出方法이 각각 相異하여 實務上의 複雜化를 招來하며 金利自由化에 따른 定期預金金利의 變動에 따라 配當金 再算으로 契約者의 誤解와 不信을 招來할 수 있다. 특히 死差 益 寄與도가 낮은 災害死亡 및 赤字要因인 災害入院 등에 대해서도 一律配當이 適用되어 災害給付가 큰 商品은 配當금이 過多 支給되고 災害給付가 적은 商品은 불리하게 되며 死差損失發生 年齡層

에는 불리하게 支給되는 등 公平性이 어긋나고 있다.

다섯째, 無配當保險 商品의 開發은 保障性 保險과 傳統的 養老保險에 대해서만 實施되고 있는 實情이며 無配當保險 商品의 出現으로 契約者配當에 대한 情報提供이 時急하다 하겠다.

V. 向後 契約者配當의 바람직한 方向

最近들어 生保業界는 계속되는 當期損失로 인하여 매우 어려운 處地에 直面하고 있는 것이 現實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支拂能力의 強化 및 財務構造의 充實化를 持續적으로 圖謀해야 할 것이며, 特히 消費者保護運動 등 周邊環境의 變化를 考慮할 때 合理的인 契約者配當 實施에 더 더욱 努力을 競走하여야 할 것이다.

政策當局 또한 契約者 配當制度의 擴大 實施을 보다 積極적으로 檢討하여야 하며, 이에 對處해야만 하는 生保業界는 各社의 自主的 努力이 절실히 要請된다 하겠다. 이에 따라서 向後 契約者配當의 바람직한 方向을 段階別로 提示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出血配當에 따른 財務構造의 惡化를 防止하기 위해서 資産運用收益에 의거하여 配當可能한 適正配當率을 政策當局에서 一律적으로 定함으로써 同一 基礎率에 의한 價格競爭의 止揚政策이 一定期間동안 先行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同一한 基礎率에 의한 價格의 事後精算에 있어서 各社別 差等適用을 할 경우 대부분의 新設社는 市場競爭力의 劣勢로 財務構造上的 危機에 直面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當局立場에서 볼 때 新設社들의 價格 競爭能力이 어느 정도 갖추어졌다고 認定될 때까지

지는 實質的 價格競爭을 配當이라는 名目으로 誘發시켜서는 안될 것이다. 또한 配當政策은 事後的 價格競爭을 意味하므로 充分한 公示와 啓導的 努力이 없이는 契約者들을 혼란스럽게 하거나 未久에 政策當局의 制度에 對한 不信을 招來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둘째, 責任準備金 積立基準이 革新的인 方法으로 再定立되어야 한다. 現在 生保業界는 支拂能力의 評價基準이며 會社 損益의 測定基本이 되는 責任準備金 積立率이 會社의 歷史나 規模에 관계없이 千差萬別로 相異한 狀態에 있는데, 이러한 K率 體制 속에서 當期損益이 무슨 意味가 있으며 그 損益에 따라 配當與否, 또는 配當規模를 定한다는 것도 무슨 意味가 있을 것인가 의아스럽다 하겠다. 總資產이 엇비슷한 會社중에서 A社는 責任準備金을 K率 100%로 積立한 후 D만큼 損失을 나타냈고 B社는 K率 0%로 積立하고 E만큼 利益을 나타냈을 때, 그 財務諸表나 責任準備金의 充實度를 어떻게 契約者가 評價할 수 있으며, 더우기 利益을 實現한 B社만 配當이 可能하다는 論理는 또 어떻게 나올 수 있겠는가? 保險産業을 指導·育成해야 하는 政策當局의 目標도 모든 生保社가 責任準備金을 純保險料式으로 積立하여 契約者에 對한 支拂能力을 充實히 하는 것이라고 믿는다.

따라서 K率は 會社別로 自由化되어서는 안되는 가장 중요한 政策課題로 다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新設會社는 一定期間(約10年)을 K率 0%에서 出發하고 段階的으로 發展하여 一定期間(約30年) 經過後에는 K率が 100%가 되도록 指導하여야 하며, 既存會社도 이 基準에 未達하는 경우는 合理的이고 適切한 經過措置를 마련하여 初期

에는 當장의 公表損失을 줄이고 漸進的으로 責任準備金의 充實度를 쌓아 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現在 서로 相異한 新設社들의 K率에 과감한 手術을 가함으로써 生保業界 共通의 發展을 위한 再出發이 있어야 하겠다. 더우기 當期利益 示現을 통한 配當金 支給을 可能케 하고자 K率을 上向시키지 못하는 것은 生保業界의 먼 將來를 보아서 가슴아픈 일이며 모든 關係者들에게도 利益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셋째, 資產運用準則등 生保社의 經營自律化를 沮害하는 要因등은 段階的으로 緩和되어야 한다. 特히 新設社의 경우는 維持保險料의 規模가 적은 狀態에서 人件費, 廣告費, 電算費 등 初期 投資性 經費가 過多支出되므로 既存社에 비해 收支差가 적을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貸借保證金, 什器備品등의 無果實 資產과 不動產등 長期的 非收益性 資產의 占有率이 크기 때문에 收益性 運用資產의 比率는 적을 수 밖에 없는 것이 現實이다. 따라서 債券의 買入등 自律的 投資에 制限을 받아 資產의 效率的 運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이러한 制限의 部分들을 自律化하고(물론, 監督院의 堅實性 書面檢討 등은 계속되어야 하겠지만) 公示制度를 導入하는 등의 自律的 競爭이 誘導되어져야 하겠다.

넷째, 1992년부터 모든 會社에 販賣를 許可한 無配當保險은 모든 商品에 許容하도록 하되, 各社가 配當附保險과 無配當保險을 自律的으로 選擇하여 販賣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配當附保險의 契約者가 無配當保險의 販賣로 인해 配當上의 不利益이 發生하지 않도록 區分計理制度를 導入하는 등 制度的 補完이 뒤따라야 할 것이며, 契約者配當의 差等化는 長期的 眼目에서 經營

效率 등에 의하여 差等化될 수 있도록 豫告的으로 實施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死差配當金の 算出時 危險保險料를 危險擔保 形態別(一般死亡部分과 災害死亡部分)로 區分하여 算出·適用시키는 것이 契約者에게 좀더 公平한 配當方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위에서 提示한 몇가지 方向에 對해서는 많은 異見이나 問題點들이 提起될 수도 있겠지만, 本人은 지금이 이를 再檢討해야 할 適切한 時期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政策當局은 保險產業의 現況 및 各社間의 實情을 正確히 分析하여 生保 產業을 어떻게 育成·發展시킬 것인가를 明確히 設定하고, 契約者配當에 관한 綜合的인 政策方向을 再設定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經營基盤이 脆弱한 新設生保社에 對해서는 當局이 생각하는 充分한 期間이 經過될 때까지는 더욱 細心한 配慮를 해야 할 것이다. 또한 各 生保社는 量的成長보다는 質的成長을 優先하고자 하는 意識上의 一大轉換이 必要할 것이며, 특히 急激한 環境變化에 對處할 수 있도록 財務構造나 內部留保의 充實化에 關心을 기울임으로써 弱肉強食이나 戰鬪隊形體制에서 벗어나 業界共存(sharing bigger pie)의 새로운 場이 열릴 수 있기를 바란다.

VI. 맺음말

國內 生保社는 契約者에 대한 支拂能力 및 財務構造의 安定性 側面에서 會社相互간의 隔差가 심한 狀態이다. 더욱이 設立된지 5년도 안된 會社가 26個社나 된다. 또한 이들의 市場參與도 生保產業을 둘러싼 環境은 生保社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런 複雜하고 多樣한 與件을 가진 國內生

保社, 특히 新設生保社를 어떻게 건전하게 育成해야 하느냐가 중요한 政策課題이다.

向後 契約者配當의 바람직한 方向은 다음과 같다. 첫째, 料率의 事後的 精算으로써 同一 基礎率에 의한 價格競爭을 止揚하는 一定期間 동안의 政策이 先行되어야 한다. 둘째, 責任準備金 積立基準을 強化하고 料率 및 配當率을 完全自律化하는 經營의 實質的 自律化로 公示的 競爭으로 誘導하여야 한다. 셋째, 契約者配當 準備金を 積立하여 契約者配當 財源을 調達하는 制度的 裝置와 財務構造의 安定化를 위한 當國의 制度가 있어야 한다. 넷째, 契約者 配當 算出에 대한 세부적 指針에 따른 公平한 配當이 實施되어야 한다. 다섯째, 經營效率을 反影하는 契約者配當의 差等化, 會社別 特化商品 및 無配當保險의 完全 許容을 漸進的으로 施行하여야 한다. 그러나 위에서 열거한 方法이 最善의 方法은 아니며 여기에도 問題는 있다. 그러므로 政策當局은 生保產業의 現況 및 各社間의 實情을 正確히 分析하여 生保產業을 어떻게 育成發展시킬 것인가를 明確히 設定하고 契約者配當에 관한 綜合的인 政策方向을 再設定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經營基盤이 脆弱한 新設生保社에 對해서는 더욱 細心한 配慮를 해야 할 것이다. 또한 各 生保社는 量的成長보다는 質的成長을 우선 하고자 하는 意識上의 一大轉換이 必要할 것이며, 특히 급격한 環境變化에 對處할 수 있도록 財務構造나 內部留保의 充實化에 關心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參 考 文 獻

1. 韓國保險計理人會, 「生命保險의 利源分析과 配當」('82)

-
2. 韓國保險計理人會, 會誌 第2號, 「死差配當의 公平性」 조동희 ('92.5)
 3. 計理人세미나, 「向後 契約者配當의 바람직한 方向」 ('92.10)
 4. 生協誌, 「契約者 配當에 관하여」 신남진 ('87. 10)
 5. 生協誌, 「生命保險會社의 剩餘金과 配當金の 決定에 관한 研究」, 김억현 ('90.4)
 6. Joseph M. Belth, 「Participating Life Insurance Sold by Stock Companies」